

# 닭·오리고기 포장유통제도 시행 계획

농림부

## 1. 축산물의 포장유통을 위한 입법 추진경과

□ ‘축산물가공처리법’을 개정(2006. 3. 24 공포, 2006. 9. 25 시행)하여 축산물의 포장유통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

□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는 동법 시행령(2006. 9. 22 공포, 2006. 9. 25 시행)에 규정하고,

• 포장방법은 동법 시행규칙(2006. 10. 14 공포)에 규정

## 2. 닭·오리고기 포장유통의 내용(법령에 규정된 내용)

□ 포장대상 축산물 및 영업자(시행령 제12조의3)

- 대상 축산물 : 닭·오리의 식육
- 대상 영업자 : 1일 평균 도축수 8만수 이상 (2005년 기준)인 도축업의 영업자

□ 시행시기 : 2006. 10. 4일부터

※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2006. 9. 25일이나, 포장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은 2006. 10. 4일부터 공포·시행

□ 포장유통의 방법(시행규칙 별표 2의 3)

### [별표 2의3]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

1. “포장”이라 함은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매단위 포장(1~5마리 단위의 포장을 권장), 부위별 포장(20kg이하 단위의 포장을 권장) 또는 벌크 포장(25마리 이하 단위의 포장을 권장)한 것으로서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(이하 “합격표시”라 한다)를 한 것을 말한다.
2.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·오리의 식육은 포장한 후 그 외부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.
3.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및 재료는 ‘식품위생법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## 〈단계별 시행관련 법제처 심사 결과〉

□ 농림부 심사요청 : 닭 ·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단계별로 시행(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반영)

- (도축장) 8만수 이상 2007. 1. 1, 5만수 이상 2008. 1. 1, (전면시행) 2009. 1. 1

□ 법제처 심사 결과

- 법률에서는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, 시행시기까지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
- 대통령령에서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곤란
- ※ 특히, 포장유통은 위반시에 제재가 따르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위임 필요

→ (법제처 수정 내용) 대통령령에는 우선 8만수 이상 도축장만을 포장대상으로 규정하여 시행(2006. 9. 25 시행, 2006. 12. 31까지 행정상 유예방안 등 마련)하고,

- 8만수 미만 도축장 및 전면시행은 필요시기에 별도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

- \* 2007년 중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여 포장대상을 5만수 이상 도축장으로 하고 (2008. 1. 1 시행),


- \* 2008년 중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하여 포장대상에 닭 · 오리 관련 도축장 · 식육포장처리장 · 판매업소 등을 모두 포함 (2009. 1. 1 시행)

## 3. 세부지침 제정 · 시행 계획

□ 주요 내용

- 포장목적, 포장의 기능 및 역할
- 식육의 위생관리
- 포장의 정의 및 방법
- 미 준수시 처분기준
- 닭 · 오리고기의 포장개념
- 축산물의 용기 · 포장지 재질

□ 향후 추진 일정

- 지침(안)에 대한 해당업체 등 의견 수렴
- ※ 10월말 현재 닭 · 오리고기 포장유통 세부 지침(안)이 발표됐으며, 현재 업계 의견 수렴중
- 지침 제정 및 시행 

행복을 걸고 인생 게임에 뛰어들었다면 관중석에만 앉아 있지 마세요. 경기장으로 달려나가세요. 완벽한 선수의 경기보다 어설픈 내 몸짓이 더 소중한입니다.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. 인생의 무대를 열심히 달려봅시다. 내가 흘린 땀은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요.

- 요제프 키르슈너